

建議書에 對한 答辯

1964年度 定期總會에서 採擇한 建議事項에 對하여 文敎部長官으로부터 지난 4月 17日 字 다음과 같은 回答이 到着되어 揭載합니다.

建 議 事 項	答 辯 事 項
1. 圖書館法의 施行令을 早速히 制定해 주실 것.	1. 圖書館法 施行令案을 草案完了하여 內部節次를 밟고 있는중임.
2. 學校圖書館, 公共圖書館 運營指導를 擔當할 部署를 文敎行政機構內에 設定하고 專門職으로서의 擔當官을 이에 配置해 주실 것.	2. 政府의 方針으로서 機構 擴張은 不許하고 있으며 專門職 配置問題는 中央管署가 行政을 爲한 企劃管廳인 만큼 전문직을 꼭 配置하여야 할것인지의 如否를 研究할 것임.
3. 司書敎師 養成을 爲한 教育을 擴大強化하고 學校管理責任者 및 一般敎師再教育 講習에서도 圖書館學 講座를 必修하도록 해주실 것.	3. 司書敎師 養成을 爲한 教育擴大 強化는 65年度 計劃樹立에 參考하여 反影토록 努力하겠으며 學校管理責任者 및 一般敎師 再教育講習에서도 圖書館 講座를 必修토록 要請한것은 現在 實施하고 있는 教育課程指針에 圖書館管理에 對한 內容이 포함 되어 있음.
4. 藏書廢棄規程 準則을 制定하여 주실 것.	4. 公共圖書館의 數가 極少하고 藏書가 보잘것 없는 우리나라 事情에 비추어 當分間 各圖書館自體에서 慎重히 다루어 주시기 바람.
5. 中·高等學校 自律經費에 月20원 程度의 圖書費를 包含하여 徵收할수 있도록 行政措置를 要望함.	5. 學校圖書館運營費(人件費 및 物件費)는 原則的으로 設立者가 負擔하여야 할 것이나 現在 學校圖書館의 人的 物的 施設이 너무나 貧弱하기 때문에 一部를 學生에게 負擔시키고 있으며 政府施策에 依하여 修業料引上 還元措置를 取한 此際에 學父兄의 負擔을 加重시키는 圖書費 增額은 現段階로는 考慮될 수 없음.
6. 各大學에서 自律經費로 徵收한 圖書費의 他費 轉用禁止와 效果의인 適期 支出을 期할수 있도록 措置해 주실 것.	6. 學生自律經費로 徵收한 圖書費의 管理에 對하여는 1961. 1. 8 자로 示達한 學生 自律經費 및 實驗實習費 管理原則 4

7. 公共圖書館의 閱覽料를 早速히 徹廢하여 주실 것.

8. 圖書館職員은 夜間에도 奉仕해야 되는 要求로 不得已 時間外 勤務手當을 支給하여 充實히 任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行政措置해 주시기 바람.

9. 圖書館資料의 整理上 必要하니 文教部 翻譯圖書에는 반드시 原著名과 原書名을 넣어 주시기 바람.

10. 教育委員會 職制中 學校圖書館 指導 監督에 關한 事務分掌 所管事項을 文藝 體育課에서 初中等教育課 所管으로 改定하여 주실 것.

11. 圖書館法 第16條에 依하여 國立中央圖書館이 設置되었으나 職制가 制定되지 않아 同法 第7條에 規定된 國立中央圖書館으로서의 機能發揮에 支障이 있으니 職制를 早速히 制定하여 주시기 바람.

항 마호에서 學校圖書購入과 圖書館運營에 不可避한 雜給 圖書製本費에만 使用하도록 限定하였으며 資金執行에 關해서는 學生會 自體의 執行 計劃에 依하도록 既히 示達하였음.

7. 圖書館法 制定當時의 63. 10월에 이에 對한 論難도 없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의 모든 실정이 무료열람하게 까지는 時期尙早라고 認定되어 徹廢할 수 없음.

8. 國立中央圖書館에 對하여는 FY 64豫算에 計上되어 있으며 公立圖書館에 있어서는 地方自體에서 豫算編成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中央에서 豫算編成權까지 일일히 指示할 性質의 것이 되지 못함.

9. 現在 번역圖書 發行은 原著名과 原書名을 記載하여 發行하고 있음.

10. 學校圖書館 指導 監督에 關한 事項을 學務局 所管으로 規定 하는것에 關하여는 當部에서도 예의 檢討中에 있음.

11. 機構擴張을 不許하는 政府方針에 依하여 이 方針이 變更되지 않는한 早速한 時日內에 職制의 制定實蹟은 困難한 것으로 認定함.